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도로법」이 개정(법률 제21172호, 2025. 12. 2. 공포, 2026. 6. 3. 시행)됨에 따라, 보도 중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구간,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로법 제5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 개정 시 관계부처 협의 완료(2026. 0. 00. ~ 0. 00.)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6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도 구간에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도로의 선형, 종단경사, 시거 불량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보도측으로 차량 이탈 위험이 큰 구간
2. 교통사고 이력, 교통량, 주행속도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
3.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이용시설, 대중교통시설 등 보행자 이용이 많은 시설이 주변에 위치하여 사고 위험이 큰 구간
4.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

⑥ 제5항에 따라 보도에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, 교통여건,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.

1. 제38조에 따른 도로안전시설 중 방호울타리 및 조명시설

2.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
 3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
 4.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- ⑦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1. 차량의 주행속도, 교통량 및 도로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보도침입 또는 이탈과 보행자의 보도 밖 추락 등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
 2. 차량의 보도침입 방지를 위한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은 해당 구간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충분한 강도 성능을 갖출 것
 3. 보행자의 연속적 통행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폭과 통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
 4. 도로 및 그 밖의 시설과 기능적 역할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
- ⑧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, 「도로교통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, 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보도) ① ~ ④ (생략)	제16조(보도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도에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</u> <u>1. 도로의 선형, 종단경사, 시거 불량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보도측으로 차량 이탈 위험이 큰 구간</u> <u>2. 교통사고 이력, 교통량, 주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</u> <u>3. 어린이 · 노인 · 장애인 이용 시설, 대중교통시설 등 보행자 이용이 많은 시설이 주변에 위치하여 사고 위험이 큰 구간</u> <u>4.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</u> <u>⑥ 제5항에 따라 보도에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의 종류는</u>
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다음 각 호와 같으며,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, 교통여건,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.

1. 제38조에 따른 도로안전시설 중 방호울타리 및 조명시설

2.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0에 따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

3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6호의 안전표지

4.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
⑦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차량의 주행속도, 교통량 및 도로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보도침입 또는 이탈과 보행자의 보도 밖 추락 등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

2. 차량의 보도침입 방지를 위한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은

<신 설>

해당 구간의 위험도에 상응하
는 충분한 강도 성능을 갖출
것

3. 보행자의 연속적 통행과 교
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저해하
지 않도록 제3항에 따른 보도
의 유효폭과 통행 동선을 고
려하여 설치할 것

4. 도로 및 그 밖의 시설과 기능
적 역할이 상호 조화를 이루
도록 할 것

⑧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및
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
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,
「도로교통법」 및 같은 법 시
행규칙, 「도로안전시설 설치
및 관리지침」 등 관계 법령 및
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
른다.